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

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3차 교육위원회)
2022. 11. 23.(수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2022년도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2022년도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❍ 제출일자: 2022년 10월 31일

❍ 회부일자: 2022년 11월  2일

## 3. 제안이유

❍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❍ 대상기관: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

❍ 출연목적 및 필요성

-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은 2000년 12월 29일 충북교육장학재단으로 설립되어 충청북도 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, 2022년 조례 제정을 통해 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 명칭 및 정관을 변경하였음.
-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 2022년 9월 19일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·출연기관으로 최초 지정·고시됨에 따라 그동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운영비로 편성하여 지원해오던 재단의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려는 것임.

-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이 필요함.

○ 출연 예정금액: 179,000천원

○ 출연내역: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사업비

○ 기대효과

- 충북 도내 우수학생 조기발굴 및 성장 지원
-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실현

## 5. 검토의견

○ 이 출연계획안은 지난 9월 19일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·출연기관으로 최초 지정·고시됨에 따라 그동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운영비로 편성하여 지원한 재단의 사업비를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려는 것임.

○ 출연금은 「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출연금)에 근거하며, 재원은 충청북도교육청과 농협은행과의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로 2021년 금고 약정시 향후 4년간 협력사업비 총 719,000천원임.

[2022년~2025년 약정현황]

(단위: 천원)

| 구분 | 2022 | 2023 | 2024 | 2025 | 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출연금* | 179,000 | 180,000 | 180,000 | 180,000 | 719,000 |

○ 출자·출연 기관으로써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 충북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○ 다만, 당초 금고 약정에 따른 운영비의 출연금 전환 이외에 교육비 특별회계에서의 출연금을 확대하여 조직, 인원을 갖추는 등 당초 재단 설립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.